

부산지방법원 2018. 9. 19 선고 2018가단22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동향신용협동조합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9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89. 12. 15. 접수 제24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9. 12. 16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창현

별지